

# 고성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4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7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5. 18  
다. 상정·의결일자 : 2005. 5. 25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공포)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띠어쓰기 시행에 따라 제명을 표기코자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재산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 (안 제25조의2)  
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 인하 (안 제27조)  
다.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 (안 제37조1항1호)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 (안 제71조 내지 제82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 대상,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주행세 세율 변경과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였으며,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시군세 조례 정비안에 맞게 고성군세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함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 : 없음**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5. 5.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